

동반성장 투자재원

Shared Growth Investment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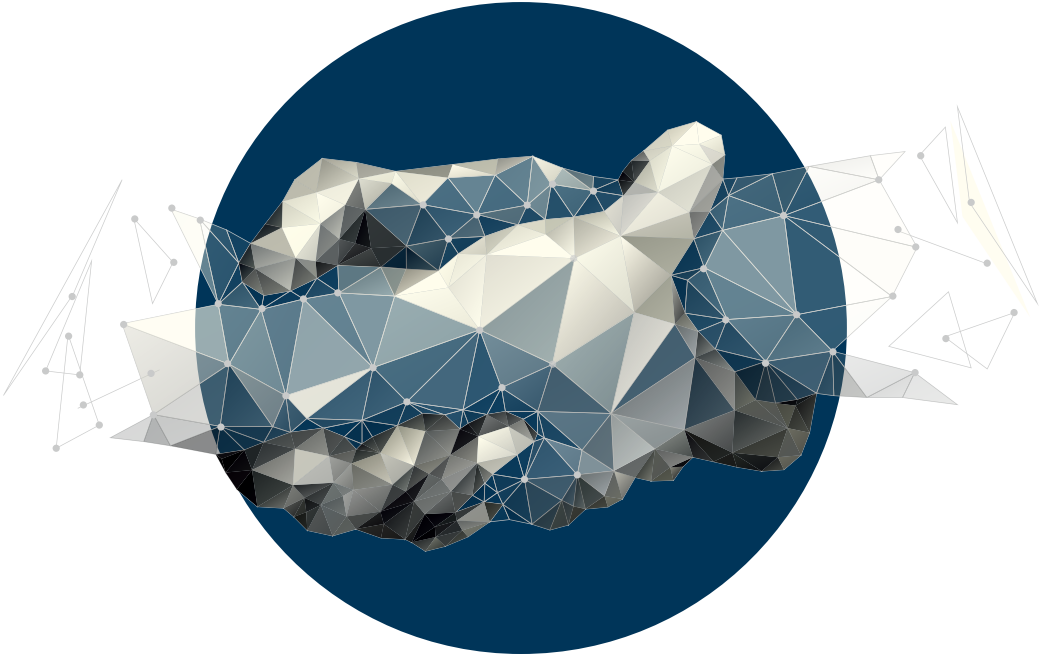
Contents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개	02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개념 및 활용사업	03
②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기금 사용 용도	04
③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추진경과 및 출연현황	05
④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혜택	06
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세제혜택 관련법령	07
3. 동반성장 투자재원	
① 동반성장 투자재원 정의 및 절차	08
②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현황	08
③ 동반성장 투자재원 추진절차	09
④ 동반성장 투자재원 지원사례	10
[참고]	
- 동반성장 투자재원 활용가이드	21
- 법인세 산출 시 세제혜택 적용 과정	23
-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과세방법	24
- 과세표준별 절세효과 분석	24



동반성장 투자재원 브로서는
위 QR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Shared Growth Investment Resources



0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개

설립목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 근거법령 : 상생법 제20조,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연혁



- '04.12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
- '06.0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10.12 :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 '17.01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명칭 변경
- '17.03 : FTA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재단 내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설치
- '17.11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영 법제화(18.5.29 시행)

역할 및 기능



- 협력재단(상생법 제20조 제2항)
 -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운영 및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
- 위원회(상생법 제20조의2 제2항)
 -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및 적합업종 합의 도출·공표
 -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한 사항

조직 및 인원 ('19. 5 기준)



0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개념 및 활용사업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이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활용 사업

1	2	3	4	5	6	7	8
동반성장 투자재원	민관공동 R&D	산업혁신운동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성과공유제	협력이익 공유제
민간자율 추진사업	R&D 지원	2·3차 협력사 컨설팅	1차 협력사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창업벤처 등 지원	성과공유제 시행지원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지원
민간 100%	정부 50%	민간 100%	정부 30%	정부 70%	민간 100%	민간 100%	민간 1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기금 사용 용도

기금 사용 용도

상생법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생법 시행령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추진경과 및
출연현황

추진경과

'10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신설 (13.12.31까지 세제혜택)

'14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개정(16.12.31까지 세제혜택 연장)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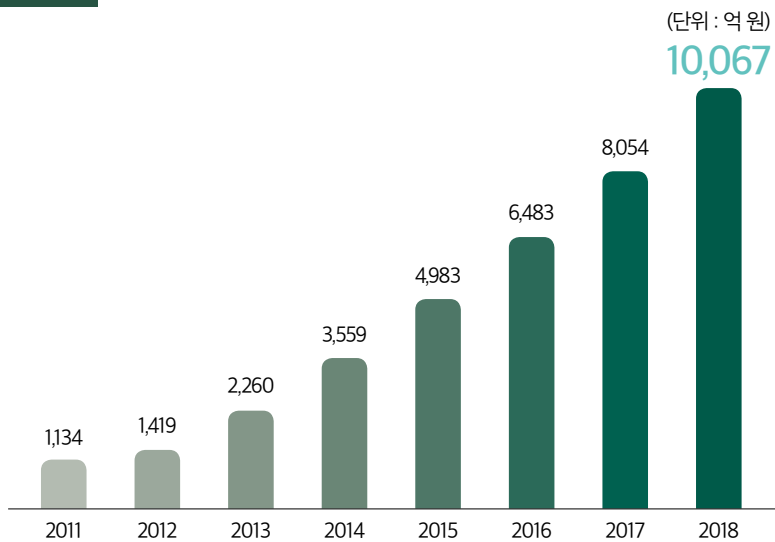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개정 (17.1.1~)

기존	내용	개정
~16.12.31	세제혜택	~19.12.31
7%	법인세공제율	10%
① 연구개발 ② 인력개발 ③ 생산성향상 ④ 해외시장진출 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기금 사용목적	폐지

'17

- 상생법 제20조의5 신설(18.5.29~)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조특법 제100조의32 신설(18.1.1~)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출연현황 (누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혜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제혜택 관련법령

세제혜택 관련법령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2.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포함)]×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법인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미환류소득)을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03

동반성장 투자재원

동반성장 투자재원
정의 및 절차

동반성장 투자재원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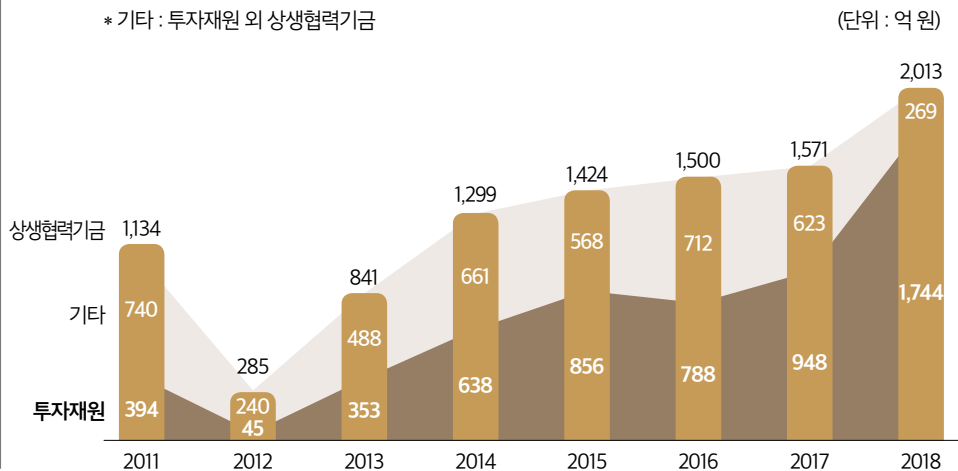


상생법 제20조의5에 따라 내국법인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지원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현황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중 약 57%(2018년 누적기준)

연도별 투자재원 출연비중



동반성장 투자지원 추진절차



* 경우에 따라 '출연 협약 체결', '출연', '사업신청 및 심사' 순서 변경 가능

동반성장 투자재원 지원사례

실제 지원사례 키워드

동반성장 투자재원 지원사업 분류



복리후생
건강검진
보육지원



경영관리
관리운영 시스템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술보호
특허·지식재산권
인증취득
기술임치



판로
국내외 전시·박람회
구매상담회
바이어 초청



R&D
연구인력
연구기자재·시설



인력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해소
채용박람회



교육
직무교육
기술교육
온라인교육



컨설팅
기술·경영·공정 컨설팅
설비지원

기술협력 촉진

연구개발 통합 지원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개발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거래 확대

• 세부내용



• 지원항목 : 기술 개발비, 기술인력 인건비, 품질·신뢰성 테스트 등

• 주요업종 : 제조업 등

※ 주의사항 연구개발 결과물(시제품,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기업 소유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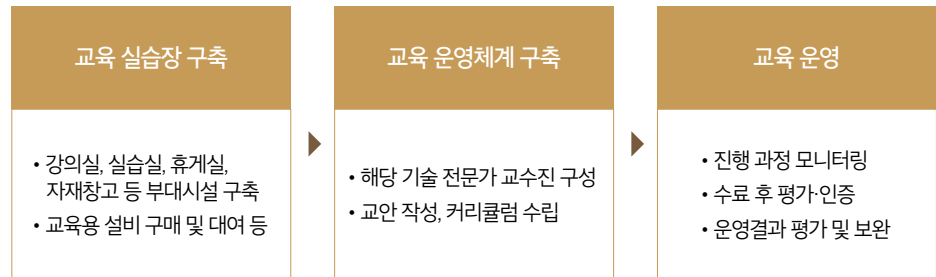
인력교류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품질 향상

• 세부내용



- 지원항목 : 시설 구축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강사비, 교육생 식비 등 교육 제반 비용
- 주요업종 : 제조업 등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기계발 교육환경 조성

➔ 업무역량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

구분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수요기반 교육
세부내용	이러닝, 인터넷 강의 등 지원	교육 전문기관 출석/강사 초빙 등 현장 강의 지원	협력사 임직원이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 수강 후 수강비 지원
지원항목	이러닝 교육 구축비, 수강비	교육 운영비, 교육장 임차비, 강사비, 실습비, 교재비 등	수강비 (고용보험환급금 제외)

- 주요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판매업, 유통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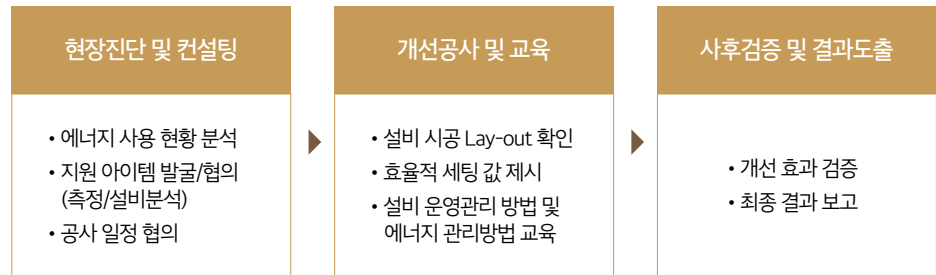
환경경영협력 촉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지원 사업

에너지 진단(컨설팅) 및 에너지 절감 설비 구매 지원

➔ 협력회사 에너지 비용절감(원가절감)을 통한 상품경쟁력 강화

• 세부내용



- 지원항목 : 컨설팅비 및 설비 구매비 등
- 주요업종 : 제조업, 유통업 등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경쟁력 향상

• 세부내용 : 2·3차 협력사, 미거래 중소기업 위주 선정



- 지원항목 : 추가 임금(상생격려금, 최저임금 인상분), 4대 보험비 등
- 주요업종 : 제조업 등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제금 공동 적립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 유도

- 세부내용 :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중소기업 : 핵심인력 = 2 이상 : 1 중소기업 부담분 일부 지원(50%) (예시 : 20~40만 원/월/인, 최대 3~5인 지원)

- 지원항목 : 추가 임금(상생격려금, 고용장려금 등), 4대 보험비 등
- 주요업종 : 제조업, 발전업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공장 구축(공장 자동화)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대응력 강화

- 세부내용 : 스마트 공장 수준별 구현 형태(1단계~3단계)에 따라 단계별 집중 컨설팅

전문 컨설팅

현장 진단, 문제점 도출, 개선 활동

설비 구축

컨설팅 결과에 따른 필요 설비 제작·설치, 테스트 등

- 지원항목 : 컨설팅비, 설비 구축비 등
- 주요업종 : 제조업, 발전업 등

환경개선 및 설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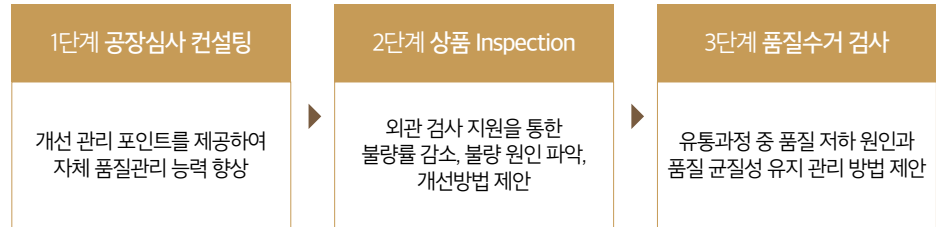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부가설비 지원 ➔ 불량률 저감, 생산 효율 향상

- 세부내용 : 성능검사 기기, 자동 분류기, 운송장치, 안전설비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집기
- 주요업종 : 유통업,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컨설팅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품질관리 지원 → 안전성 등 품질 개선, 경쟁력 강화



- 지원항목 : 컨설팅비 등
- 주요업종 : 유통업, 식품제조업 등

인증취득 컨설팅

특허/인증취득 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기술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 성장 유도

- 세부내용 :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맵 작성, 필요 인증 진단 및 취득 지원
- 주요업종 : 유통업, 제조업, 발전업, 정보통신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특허 출원 지원 | 기술 공개

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보호 → 기술 침해 예방 및 고유 기술에 대한 권리 행사

- 세부내용 : 국내·외 특허 출원을 위하여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 이용
- 지원항목 : 특허법인 수수료, 특허청 관납료 등 소요 비용 전반
- 주요업종 : 제조업, 발전업, 정보통신업 등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 기술 비공개

핵심 기술자료를 전문기관에 보관 → 개발 기술의 탈취·유출 등 예방 및 개발 사실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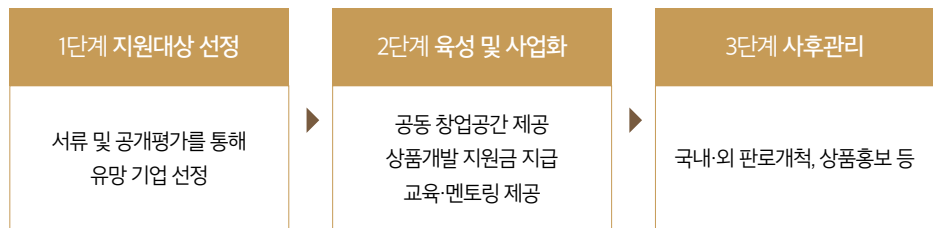
- 세부내용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이용
- 지원항목 : 기술임치 서비스 이용료
신규 1년 30만 원/건, 갱신 1년 15만 원/건(면세사업으로 부가세 없음)
- 주요업종 : 제조업, 발전업, 정보통신업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창업·벤처기업 사업화 지원

초기 창업·벤처 기업의 사업화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산업발전 기여

- 세부내용 : 발굴, 육성, 사업화, 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 지원항목 : 전문가 활용비(멘토링), 상품 개발비, 홍보비 등
- 주요업종 : 유통업, 발전업 등

국내외 판로 확대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1 해외매체 활용

해외 홈쇼핑 채널 방송 지원 → 해외 홍보, 매출 증대

- 세부내용 :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멘토링 및 제품 홍보

방송기회 확보	방송제작 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시간 확보	+	방송판매제품 현지인증취득	현지 유명 게스트 및 모델 섭외	제품 홍보 영상물 제작

- 지원항목 : 방송편성 확보비, 현지 유명인 섭외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
- 주요업종 : 판매업(홈쇼핑)

2 해외매장 활용

국내 중소기업 제품 해외 홍보관 운영 → 현지 바이어와 연계한 수출 기회 제공

- 세부내용 : 해외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전용 매장 구축 및 운영
- 지원항목 : 현지 매장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제품 광고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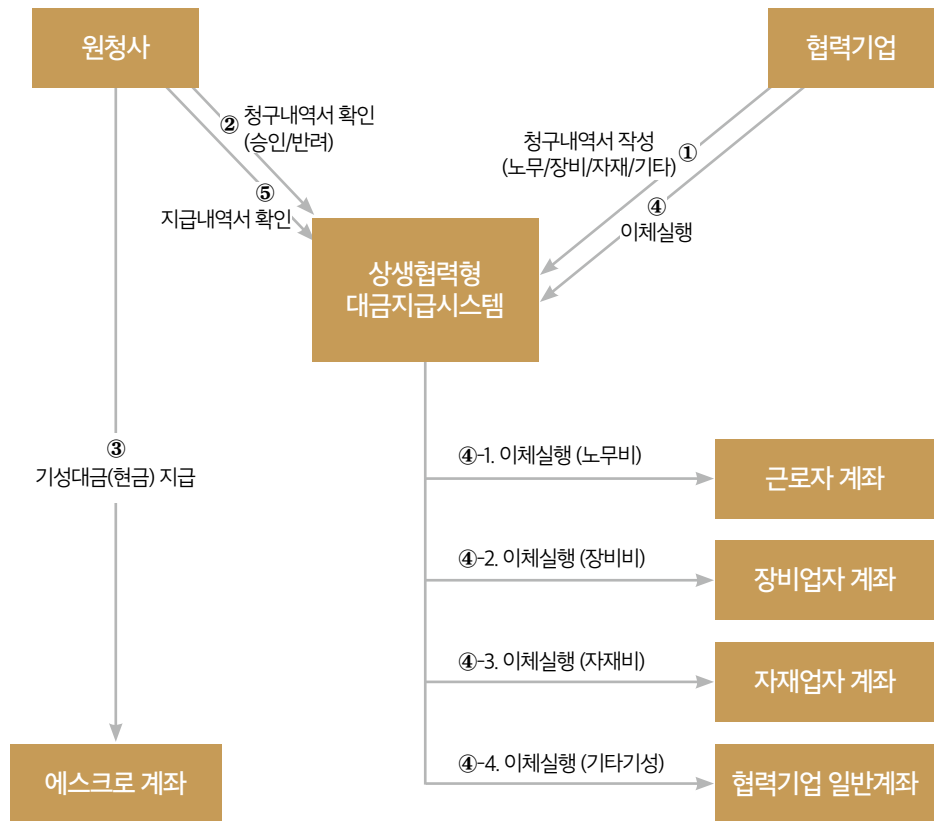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

상생협력형 대금 지급 시스템 이용 수수료 지원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독려 ➔ 2·3차 협력사 자금 유동성 확보

- 세부내용 : 원청사(대기업)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불해야 할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이 2·3차 협력회사에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
- 지원항목 : 1차 협력사가 시스템을 통해 2·3차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이체 시 발생하는 계좌이체 수수료 전액
- 주요업종 :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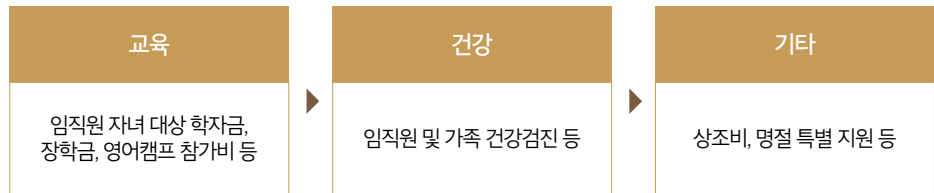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

복지후생 지원

1 협력사 임직원 대상

대기업 등과 동일 수준의 복지 프로그램 제공 → 격차 해소

- 세부내용 및 지원항목



- 주요업종 : 전 업종

2 협력사 대상

협력사 관련 행사, 간담회 등 개최 → 사기 증진 및 지속적 협업 관계 강화

- 세부내용 및 지원항목



- 주요업종 : 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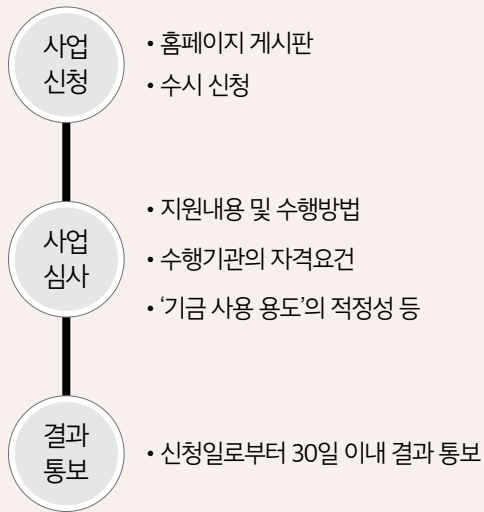
기타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지원항목
기술협력 촉진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중소기업 상품의 경쟁력 향상, 매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의뢰비, 캐릭터 라이선스 사용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협력사 채용박람회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확대	채용박람회 운영비 (기업별 홍보, 상담부스 등)
	고용장려금 지원	신규인력 채용 시 기업별 임금지원	채용 확정인원 임금 일부 (예시)월급여의 30%, 최대 70만 원, 1년간, 30인 한도
생산성향상	수확물 관리 선진화 기반구축 사업	수확물 운송방식 및 공급방식 개선	신형 트랙터 지게발 지원 수확물 선별 완충기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설비 지원	전통시장 공용 물류부분 및 인테리어 개선	화물엘리베이터, 연결브릿지, 집기, 조명, 인테리어 공사 및 집객시설 설치비
	품질관리컨설팅	중소기업 생산품 품질관리 진단 및 위생안전도 개선 컨설팅	컨설팅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취득 지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K-OHSMS, OHSAS)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 지원	컨설팅, 인증심사비 등 인증취득비용 (소요비용의 75% 이내 지원)
	협력사 안전 설비 지원	응급구조장비 구매 지원	자동심장제세동기, 안전화 등 구매비용
	노무 상담회 제공	협력사 대상 노무상담회를 개최하여 자유로운 상담기회 제공	노무사 설외비
국내외 판로 확대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참가 지원	박람회 출품, 바이어 미팅 등 지원	부스비, 통역비, 바이어 초청비, 물류비, 숙박비, 교통비, 참가비 등
		전시회 참관 등 벤치마킹, 시장조사 지원	숙식비, 교통비, 참가비 등
	AEO인증 취득 지원	수출협력기업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공인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설비지원	컨설팅비, 인증 취득비

참고

동반성장 투자재원
활용가이드

심사신청



필요서류

- ① 사업신청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②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결과보고서
- ③ 수행기관 정보 및 사업자등록증

지급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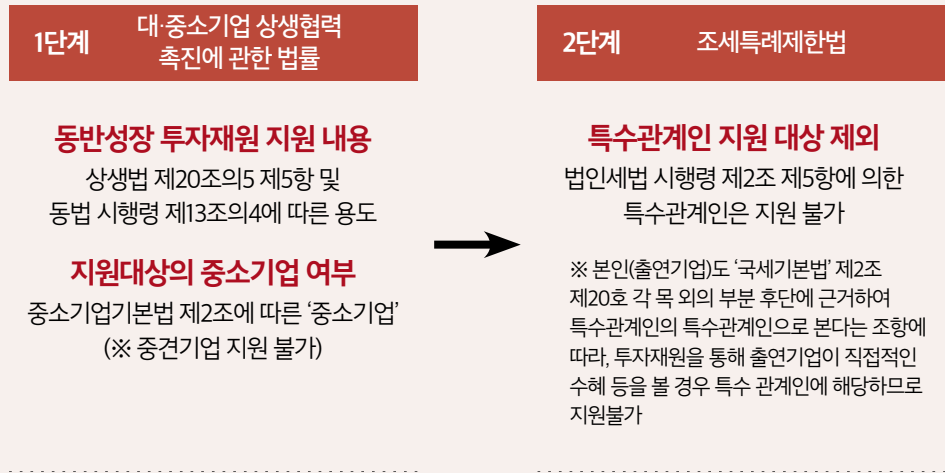


필요서류

- ① 지급신청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② 사업결과보고서
- ③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 ④ 중소기업확인서
- ⑤ 지급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심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 투자재원 과제 발굴 시,
아래와 같이 활용가능 여부를 자체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재원 활용가능 여부 사전 검토표	확 인	
		예	아니오
공동	① 지원내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사용 용도에 해당합니까?	○	
	② 수혜(지급)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	
	③ 수혜(지급)대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까?		○
R&D	④ 기금활용이 상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대금과 구별되어, 시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비에 해당합니까?	○	
	⑤ 수혜(지급)대상자가 지원내용에 대하여 매입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계산합니까?		○
	⑥ 귀 사(기관)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부분 외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	
	⑦ 결과물(시제품,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지분을 산정 시, 귀 사(기관)의 기여도 (상생협력기금 지원 제외)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정합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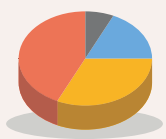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 조특법 제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출연기업에게 있습니다.

**법인세 산출 시
세제혜택 적용 과정**



참고사항

법인세법 제55조(세율)



과세표준	세율(누진세적용)	
	과세표준의 10%	-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금의 20%	+ 0.2억 원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금의 22%	+39.8억 원
3천억 원 초과	3천억 원 초과금의 25%	+655.8억 원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과세방법

과세방법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1호, 2호 방식 중 선택

※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 원으로 본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1호

(투자형)

$$[\text{기업소득} \times (60 \sim 80\%)] - (\text{투자} + \text{임금증가} + \text{상생협력}) \times 20\%$$

- 기계장치 등 자산 투자 합계액
- 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증가금액의 가중치 최대2배 또는 절대금액)
-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지출금액의 가중치 3배)
- * 60~80% → 65%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5항)

2호

(비투자형)

$$[\text{기업소득} \times (10 \sim 20\%)] - (\text{임금증가} + \text{상생협력}) \times 20\%$$

- 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증가금액의 가중치 최대2배 또는 절대금액)
-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지출금액의 가중치 3배)
- * 10~20% → 15%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5항)

과세표준별
절세효과 분석

과세표준별 절세효과

- 세제혜택 : 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호 비투자형)
③ 상생협력기금 법인세 세액공제 10%

과세표준	세제혜택 효과(%)			
	②	①&②	②&③	①&②&③
2억 원 이하	60	73	70	83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60	83	70	93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60	85	70	95
3천억 원 초과	60	85	70	95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활용을 위해 출연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 시
미출연 시 대비 **출연금의 최소 60%~최대 95%까지 세제혜택 발생 가능**

* 기업의 경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련법령

상생협력기금 관련 주요 법령은 아래 QR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각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